

2026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 신청공고

- 수입등록·검사 -

- **지원대상** : 한국 농식품 수출(예정)업체
 - * 대기업(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) 제외
(단,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)
 - * 벤처, 창업, 사회적 경제 기업 우대(선순위 지원)
- **지원품목** : 한국 농식품(농·임·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)
 - * 공산품, 수산식품 지원 제외
- **신청기간** : 수시접수(모집공고 게시일 ~ 10월) *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
 - * 접수는 마감되더라도 지원은 12월까지 연속 지원
- **신청방법** : 수출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 > 사업신청 > 농식품현지화지원사업
 - * 제출서류는 [신청] 버튼을 클릭하면 국가별 안내사항 확인 가능
 - * 진행과정 중 별도 자료를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
- **지원한도** :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* 합산하여 수출업체별 50백만원
 - * 수입등록·검사 뿐 아니라 전문기관 자문, 라벨링 현지화, 지원금액 합산
 - * 연간 업체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업체에서 자부담
- **지원내용**

구분	세부내용	지원비율
수입 등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지 수입 등록 시 필수 등록(갱신) 대행 지원 - (중국) 해외생산기업·제품 및 수출기업 등록 대행 - (미국) FDA 제조시설 등록(FFR), 저산성식품(FCE-SID) 등록(pH, aw검사 포함) 	80%
식품 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입식품 검역 및 검역강화 조치에 따른 식품검사비 지원 - (카타르) 식품 적합성 인증(CoC) 발급비 * ('25) 식품검사비만 지원 > ('26) 발급비 전제로 지원확대 - (중국) 영유아 조제분유 성분등록 식품검사비 * 검역강화 조치 등 비관세장벽 이슈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지원내용 추가·변경 가능 	80%

- * 위 명시된 내용만 현지화사업의 지원대상이며, 잔류농약 검사비(다성분·단성분 회당 검사비), 식품위생 검사비(미생물·바이러스 등 검사비)는 “안전성검사 사업” 담당부서(061-931-0833)로 문의
- * 바이어가 진행하는 현지 수입식품 검역 시 발생하는 현지 식품검사비는 바이어 모집공고 참고

< 유의사항 >

- 중국 해외생산기업, 미국 FDA 식품제조시설은 수출업체 자체적으로 등록하실 수 있으며, 직접 등록하시면,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(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문기관을 통한 등록대행비(수수료)입니다.)
 - 중국 해외생산기업 등록방법 : kati.net-자료-보고서-이슈별조사-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신청 매뉴얼
 - 미국 FDA 식품제조시설 등록방법 : kati.net-자료-보고서-외부발간보고서-식품 수출 안내서 미국편
-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시, “정부추천” 품목은 현지화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불가합니다. “정부추천” 품목(식품 및 홍삼)은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(043-719-2037, 2033)로 등록절차 문의 바랍니다.
 - 중국 “정부추천” 품목 확인 방법 : 해외생산시설 정부추천 대상(링크)
- 1년에 10건 이상 취소한 경우, 차년도까지 추가 신청 불가('27년부터 제재 적용)